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:이상헌·안민석·김민석

김병욱 • 김기현 • 문진석

김홍걸 · 홍정민 · 전용기

유동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 9"라 함)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,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,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심각한 피 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제1 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월간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판매액(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월간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,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영업 실적이 없거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판매액을 월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보다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한 영 화상영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부과금의 징수) ① 영	제25조의2(부과금의 징수) ①
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	
전 및 영화·비디오물산업의 진	
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(비상	
설상영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에 입장하는 관람	
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	
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	
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	
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	
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	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	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
	월간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
	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(2개
	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
	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
	입장권 월간 판매액의 합계를
	말하며, 직전 연도의 같은 달

의 영업 실적이 없거나 1월
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
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간
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
한다)보다 100분의 50 이상이
감소된 영화상영관
② ~ ⑦ (생 략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